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01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김선교 · 구자근 · 정동만
김상훈 · 김성원 · 안철수
김미애 · 윤상현 · 최보운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병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병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의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의 사업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26조의3 등).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수리업
4. 선용품공급업

제26조의3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의3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 한다.

제31조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등록의 신청) ①·②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등록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u> <u>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u></p>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

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항만운송사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

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한을 받지 아니한다.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수리업

4. 선용품공급업

⑦ -----

----.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 3. (생략)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

 -----항만운송관련사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p>연료공급업을 한 자</p> <p>2. (생 략)</p>	<p>-----</p> <p>2. (현행과 같음)</p>
-----------------------------------	---------------------------------